

「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」 일부개정고시(안) 입안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9-150호, 2009. 06. 03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교적 품질변화가 적은 식품인 면류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「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입안예고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.

- 가.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품목 확대
- (1) 면류 중 국수, 냉면, 당면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여 유통기한설정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 입안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153호, 2009. 06. 05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·축·수산물에 대한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·개정, 부정유해물질 불검출 기준 신설, 검체채취 및 취급 방법의 과학적,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, 식품의 제한적 사용원료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식품개발 등 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」(안)을 입안예고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- 가.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·개정 (별표 4)
- (1)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사용등록이 되거나 이미 사용등록이 되어있는 농약들에 대한 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함.

- (2) 이민옥타딘 등 40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프로헥사디온-칼슘 잔류허용기준 신설

- (3) 농약으로 인한 농작물의 안전성 확보
- 나.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·개정 및 시험법 개정[제 10. 15.] 및 (별표 7)

- (1)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재·개정하여 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(2) 나프실린 등 21종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, 다노플록사신 등 3종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관련 시험법 제·개정
- (3) 동물용의약품으로부터 축수산물의 안전성 확보

다.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 [안 제2, 5, 12), (2)] 및 [안 제10, 22, 1)]

- (1)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물질을 합성·제조하여 식품에 혼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물질에 대한 기준 추가 필요
- (2)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치오호모실데나필, 데설포바데나필, 니트로데나필, 싸이클로펜티나필, 옥틸노르타다라필에 대한 불검출 기준 추가
- (3) 부정유해물질 혼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

라. 일반검체채취를 위한 검체채취결정표 신설 [안 제9, 3, 4)]

- (1) 검사대상의 크기(수입량)를 고려한

- 합리적 검체채취수 규정이 필요
- (2) 일반 식품등의 검사대상 크기에 따라 비례적으로 검체채취수 증가
- (3) 보다 강화된 검체채취를 통해 식품등의 검사 신뢰성 확보

마. 다수의 영업자가 같은 선박으로 선적, 수입하는 벌크제품의 검체채취법 신설 [안 제9, 4, 1), (4), ③]

- (1) 하나의 선박으로 수입되는 여러건의 벌크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법 필요
- (2) 같은 선박 벌크제품의 같은 처리를 위해 검체채취수 및 시험검체수 마련
- (3) 같은 제품에 대하여 같은 처리를 함으로써 부적합 시 합리적인 관리 가능

바. 식별표 부착 규정 신설 및 부표 10. 식별표 양식 마련[안 제 9, 4, 3) 및 12. 부표 10.]

- (1) 수거에 따른 검체 개봉 후 분실제품에 대한 민원발생
- (2) 수입식품검사의 경우 검체 수거 시 수거량 등을 식별표에 기재하여 당해식품에 부착 규정 마련
- (3) 제품의 수거량 명확화를 통한 민원발생 감소

사. 개별 검체채취법 개정 및 신설 [안 제 9, 6, 1)~5)]

- | |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검사대상인 식품의 종류, 검사항목 등 특성을 고려한 검체채취법 마련 필요 (2) 수산물의 검체채취법 개정 및 잔류농약, 아플라톡신, 동물용의약품, 유전자재조합성분 검사 및 컨테이너상 검체채취법 별도 마련 (3) 비균질한 식품등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 검체채취법 마련으로 검사 신뢰성 강화 <p>아. N-아세틸글루코사민 등 4종을 식품의 제한적 사용 원료로 인정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식품원료에 사용을 확대하여 다양한 식품 개발 저해요인을 정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힘 (2) N-아세틸글루코사민, 식물스테롤, 식물스테롤에스테르, 식물스타놀에스테르 등 4종의 사용량 및 섭취량 제한을 통한 식품의 제한적 사용원료로 인정 (3) 다양한 식품개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<p>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|
|--|--|

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 입안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157호, 2009. 06. 09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중 납, 카드뮴 등 유해중금속,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, 대장균 등 미생물 규격을 신설·강화하고자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입안예고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결정셀룰로오스 등 30품목의 성분규격 제·개정

- (1) 납, 카드뮴, 수은 등 유해중금속 규격 강화 또는 신설

- (2) 제조과정 중 잔류될 수 있는 잔류용매 규격 신설
- (3) 세균수, 대장균, 살모넬라, 진균수 등 미생물 규격 신설
- (4) 성분규격 개정을 통한 식품첨가물 안전성 확보